

# 대학발전기획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: 2011.05.01  
개정 : 2011.11.22  
개정 : 2019.07.10  
개정 : 2020.03.01  
개정 : 2021.12.01  
개정 : 2023.10.16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의 발전계획을 수립·평가·개선하여 대학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학발전기획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.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 발전계획 수립
2. 발전계획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
3. 대학 발전계획 연차 환류계획 보고
4. 기타 대학발전에 관련되는 주요정책 연구 및 계획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② <삭제 2023.10.16.>

③ 위원의 선임은 발전계획의 목적 및 규모에 따라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(기획)위원과 연구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⑤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>

⑥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둔다.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분과(기획)위원, 연구위원,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4조의2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. <개정

2021.12.01.>

②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시 3일 전에 통보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[본조신설 2019.07.10.]

제5조(심의) 대학발전계획은 수립 후 대학평의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통해 확정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## 제2장 대학 발전계획 수립

제6조(발전계획 추진단계) 발전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시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기존 발전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
  - 가. 대학의 사명 <개정 2021.12.01.>
  - 나. 대학비전
  - 다. 교육목표
2. 기존 대학 발전계획의 연차 성과평가보고서 검토
3. 대학발전계획 수립
4. 대학발전기획위원회 심의 <개정 2019.07.10.>
5. 대학평의회 심의 및 확정
6. 법인이사회 승인
7. 공포
8. 발전계획 연차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

제7조(발전계획 구성요소) 대학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
2. 교수연구발전에 관한 사항
3. 계열, 학과의 운영계획
4.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
5. 학생역량 강화 계획
6. 평생교육 활성화 계획
7. 경영 및 재정 계획

- 8. 교육환경 개선 계획
- 9. 정보화 계획
- 10. 국제화 계획
- 11.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

제8조(사업계획작성) 대학발전계획의 사업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1. 구체적 사업목적에 따른 연도별 달성 목표
- 2. 사업별 예산계획 작성
- 3. 사업 추진 주무부서 지정

### 제3장 평 가

제9조(성과평가) ① 성과평가 주기는 1년을 단위로 실시하며 연차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.

- ② 성과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발전계획에 반영한다.
- ③ 대학발전계획 완료시 최종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.
- ④ 각 계열, 학과에서는 계열, 학과 발전계획의 연차별 성과평가보고서 및 최종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.

### 제4장 특성화 계획

제11조(특성화) 대학의 특성화 계획은 대학발전계획에 포함하며, 경우에 따라 별도의 조직에 의해 특성화 발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